

#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우067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갑목빌딩 7층/ 전화(02)583-0887/ 전송(02)521-5629  
 E-Mail : [kshp21@korea.com](mailto:kshp21@korea.com) / 사무국장 손현아 / 부장 조용준 / 담당 김민하 대리

문서번호 병약 2019-739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9. 7. 26 (금요일)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수 신 2012년도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자		번호			
참 조 약제부서장	처리과				
	담당자				

## 제 목 2019년도 전문약사 자격증 재인증 신청 안내

1. 귀 원 및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능통하고 약물요법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제1차 자격시험 이후 지난 9년간 10개 분과 총 824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습니다.

3.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 제17조(자격갱신)에 의거, 전문약사 자격증은 7년간 유효하며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재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재인증 대상자는 2012년에 제3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로, 재인증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기한 내 재인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3]의 재인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재인증 대상자 : ① 2012년 제3차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 2011년 제2차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유예 신청자

나. 재인증 조건 (2012년도 전문약사 취득자 기준)

구 분	내 용
필수 조건	<b>정회원(자격증 취득 후 재인증 시점까지 7년 이상 회원 유지)</b>
선택 조건	<p>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약학분과협회에서 인정한 관련 교육 16시간 이수</li> <li>• 해당 분야 관련 논문 실적 2편(회지 등에 발표, 공동저자 포함)</li> <li>• 병원약학분과협회에서 인정한 관련 교육 8시간 이수 및 해당 분야 관련 논문 실적 1편(회지 등에 발표, 공동저자 포함)</li> <li>•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li> </ul>

※ 해당기간에 재인증 신청 및 유예신청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인증에서 탈락  
이므로 재응시하여야 함.(단, 재인증 신청 후 미충족으로 탈락 시 1년 뒤 1회에  
한하여 재인증 기회 부여)

※ 재인증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함.

다. 재인증 신청 방법

본회 홈페이지 전문약사 재인증 신청 메뉴 이용(추후 다시 안내)

라. 신청 기간 : 9. 16(월) ~ 9. 27(금)

※ 증빙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경우 9. 27(금)까지 사무국에 도착해야 함

마. 재인증 비용 : 10만원(자격시험 응시료의 50%)

※ 입금계좌 : 하나은행 779-910012-08204 (사)한국병원약사회

바. 재인증 자격증 발급 : 11. 22(금)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사. 문의 : 본회 사무국(담당 김민하 대리 / Tel. 02-583-8802)

붙임 : 1. 전문약사 재인증 조건 및 가이드라인

2. 전문약사 재인증 신청서 양식

3. 전문약사 재인증 유예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사) 한국 병원 약 사 회



[붙임1]

# 전문약사 재인증 조건 및 가이드라인

1. 근거규정 :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 제17조(자격갱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7년마다 전문약사 자격을 소정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재인증한다.

2. 전문약사 재인증 조건

구 분	내 용
필수 조건	정회원(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이후 재인증 시점까지 7년 이상 회원 유지)
선택 조건	<p>&lt;다음의 조건 중 하나 충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을 7년간 28시간(연간 4시간 수준) 이상 이수토록 함 단, 재인증 관련교육은 약사 의무연수교육 8시간과는 별도로 이수해야 함</li> <li>• 해당분야 관련 논문을 7년간 2편 이상 병원약사회지 등에 발표하도록 함(공동저자 포함)</li> <li>• 해당분야 관련 논문을 7년간 1편 이상 병원약사회지 등에 발표하거나(공동저자 포함) 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을 7년간 14시간 이상 이수토록 함 (①항과 ②항 절반씩 충족)</li> <li>•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함</li> </ul>

3. 전문약사 자격시험 자격증 유효기간에 따른 경과규정

- ① 재인증 준비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재인증 준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두기로 함
- ② 단, 재인증 조건으로 인정되는 교육이수와 논문발표는 재인증 기준 공지(2016년 1월 19일) 이후에 실시된 경우를 인정대상으로 함

취득 연도	전문약사 인원(명)	자격증 수여일	재인증 연도	재인증 준비기간	경과규정			
					① 관련교육 이수시간	② 관련논문 발표편수	③ 관련교육 이수시간	관련논문 발표편수
2010	75	11.20	2017	약 2년	8시간	1	-	-
2011	40	11.19	2018	약 3년	12시간	1	-	-
<b>2012</b>	<b>50</b>	<b>11.17</b>	<b>2019</b>	<b>약 4년</b>	<b>16시간</b>	<b>2</b>	<b>8시간</b>	<b>1</b>
2013	40	11.16	2020	약 5년	20시간	2	10시간	1
2014	57	11.22	2021	약 6년	24시간	2	12시간	1

4. 전문약사 재인증 교육 인정 기준 및 범위

- ①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원 자체(원내)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약제부 자체 세미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소속병원 주최 다수 참석 가능한 공개교육은 인정함(○○병원 주최 종양심포지엄 등)
- ②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병원약학과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은 재인증 교육으로 인정함
- ③ 재인증 교육 중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은 차별없이 동일 시간으로 인정함

**5. 재인증 논문 인정 기준 - 해당 분과 관련 학술지 모두 인정**

- ① 논문발표는 게재(published) 시점 혹은 게재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재인증 기준이 발표된 2016년 1월 19일 이후 게재 혹은 게재 확정 논문부터 인정)

**6. 정해진 연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연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인증 신청기간에 사유를 기재하여 재인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함

**7. 기타 유의사항**

- ① 재인증 필수조건이 '정회원'이므로 2012년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후 2019년까지 휴직이나 이직 등으로 연속 7년간 회원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은 공백이 발생한 해당 연도만큼 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함
- ② 연수교육 이수나 논문 실적이 없는 경우는 2019년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대응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응시료는 기본 응시료(20만원)와 동일함

[붙임2]

## 전문약사 재인증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약사 면허번호	
	병원명				
응시 분야 (2012년 기준)	<input type="checkbox"/> 내분비질환약료 <input type="checkbox"/> 심혈관계질환약료 <input type="checkbox"/> 영양약료 <input type="checkbox"/> 장기이식약료 <input type="checkbox"/> 종양약료 <input type="checkbox"/> 중환자약료				
재인증 기준 (경과규정 적용)	필수	<input type="checkbox"/> 정회원 7년간 유지(2013~2019년까지) <input type="checkbox"/> 정회원 7년간 유지 못함(홈페이지에서 누락 연도 확인) ※ 7년 중 회원신고 공백이 발생한 해당 연도만큼 회비 추가 납부 요함			
	선택	<input type="checkbox"/> 해당 분야 관련 교육 16시간 이수 (2016.1.19 이후 이수 실적 인정) <input type="checkbox"/> 관련 논문 2편 발표 실적 (2016.1.19 이후 발표 실적 인정) <input type="checkbox"/>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 교육 8시간 이수 및 해당 분야 관련 논문 실적 1편(회지 등에 발표, 공동저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도 전문약사 자격시험 재응시			
관련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본회)한국병원약사회		. . ~ . .		
	(타학회 및 타기관)		. . ~ . .		
			. . ~ . .		
			. . ~ . .		
	증빙자료(업로드)	<b>* 타 학회 교육 이수 및 논문 발표자는 증빙 서류 첨부</b>			
관련논문 발표	제목				
	학술지명	저자	논문 게재일	권 호수	
			. . .		

본인은 위와 같이 전문약사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병원명 : \_\_\_\_\_ 이름 : \_\_\_\_\_ (서명, 인)

**(사)한국병원약사회 회장 귀하**

[붙임3]

## 전문약사 재인증 유예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약사 면허번호	
	병원명			
응시 분야 (2012년 기준)	<input type="checkbox"/> 내분비질환약료 <input type="checkbox"/> 장기이식약료	<input type="checkbox"/> 심혈관계질환약료 <input type="checkbox"/> 종양약료	<input type="checkbox"/> 영양약료 <input type="checkbox"/> 중환자약료	
재인증 신청 불가 사 유				
	※ 증빙서류 첨부(필요시)			
재인증 유예 희망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2020년에 재인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년) - 직접 기재			
본인은 상기 사유로 전문약사 재인증 유예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병원명 : _____ 이름 : _____ (서명, 인)				
<b>(사)한국병원약사회 회장 귀하</b>				

※ 재인증 유예 신청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함